

수 신 : 정회원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4.3억 원 미만 전문공사 수주 제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 4.30.(목)까지 사무처로 제출(FAX 032-428-733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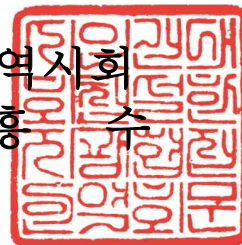
- 전문공사 보호구간 금액 범위 하위법령 위임(안 16조제1항제4호)
- 종합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수 없는 전문공사의 구체적 범위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전문공사 보호구간 기간 삭제(부칙 제2조 삭제)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incheon.kosca.or.kr) - 협회공문 참조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회 장 조 흥 수



담당자 사원 최현탁 과장 김주현 부장 계박사 실장 문승주

시행 전건협 인천 제324호(2026. 4.24)

우 21574/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구월동, 전문건설회관) / <http://incheon.kosca.or.kr>

전화 032-428-7331 / 전송 032-428-7334 / 전자우편 qrt9373@kosca.or.kr